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우리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
|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oori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작성기준일 | 2010년 03월 15일 |
|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0년 03월 16일 |
|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우리자산운용(주) / 각 판매회사 |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동 간이투자설명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펀드코드: 61086)

(종류) 클래스	Class A1	Class C1	Class C2	Class C3	Class C4	Class C-e	Class C-W	Class C-H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1087	61088	74435	92774	92775	61175	61586	73757

2. 모집(판매) 예정기간¹ : 추가로 납입이 가능한 펀드로 별도의 모집(판매)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 모집(판매) 예정금액² : 10조좌

4. 펀드존속기간³ : 이 펀드는 별도의 존속기간(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분 류 : 증권 투자신탁[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6. 집합투자업자 : 우리자산운용(주) (주요업무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등)

1) 투자신탁의 업무위탁

- 해외위탁사 : 신고서 최초 제출일 현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Limited이나 2009년 6월 10일자로 Mellon Capital Management Corporation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업무위탁범위 :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주1) 향후 선임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손해를 끼친 경우, 투자신탁의 100억 미만의 소규모설정 또는 집합투자업자-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제반 사정 등에 의한 경우, 선임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계약 제 43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거나 해임될 경우 별도의 업무위탁 없이 운용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1)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주식	60%이상 (글로벌천연자원 주식에 60% 이상)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합니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다만,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글로벌천연자원 주식"이라 합니다)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합니다
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¹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²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예정금액까지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하며,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³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주1) 위의 투자대상은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투자대상을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본 신탁계약 제17조에서 정의된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관련주식 등에 투자하여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MSCI World Commodity Producers USD 지수 90%, KBP 콜지수 10%

* 신고서 최초 제출일인 2009.04.17 현재 비교지수는 'CS 천연자원 지수 90%, KBP 콜지수 10%'이나, 2009년 6월 10일부터는 'MSCI World Commodity Producers USD 지수 90%, KBP 콜지수 10%'로 비교지수가 변경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 CS 천연자원 지수는 MSCI Mining 지수 50%, MSCI Energy 지수 25%, MSCI Paper & Forest 지수 15%, MSCI Chemical 지수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MSCI World Commodity Producers USD 지수: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인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만든 지수 중 Energy, Metal, 농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한 달러화로 표시되는 주가지수 (지수현황은 <http://www.msibarra.com>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전체 시장상황 또는 특정산업분야(Sector), 지역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따라서 고유한 투자전략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이 투자신탁과 비교지수 간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종목 및 가격변동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개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시장 상황 및 펀드 운용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및 비교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비교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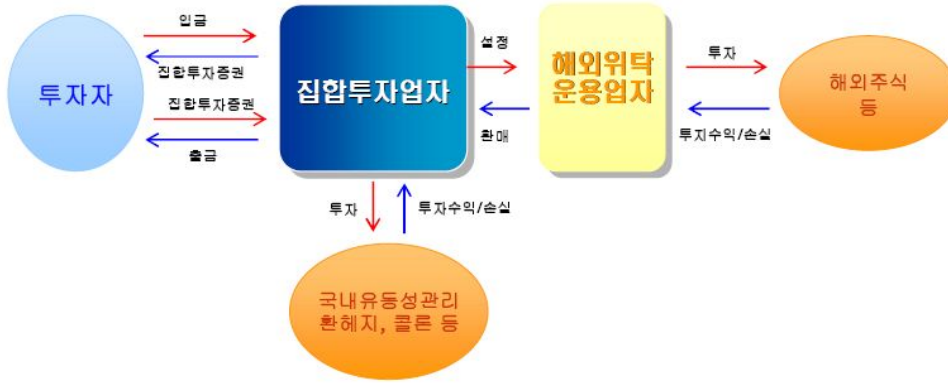
2)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 ① 이 투자신탁은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 대한 전망 및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여러 증권시장에 존재하는 투자기회 등을 고려하여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관련주식 등에 투자신탁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투자신탁자산의 40% 이하를 한국의 국공채, 신용등급 BBB-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진 채권, 예금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 ② 이 투자신탁은 주로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신탁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것이 기본운용방침이지만, 운용전략이나 환경의 변화에 각 자산 별 투자비중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그 투자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용방침은 국내외 금융시장 및 경제 상황의 변화 및 전망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③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주요통화[국제거래상 주요결제수단 중에서 국내 선물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 순자산평가액 70±30%의 목표 환헤지 수준을 유지하는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며, 주요통화 이외의 기타통화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 전략의 실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추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은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관련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 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손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 투자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율변동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물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현재 환헤지 대상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헤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과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제한된 수의 종목에 투자하게 되고, 또한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는 투자대상 국가들의 대표적인 지수들의 변동과는 별개로 투자대상인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과 관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와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상기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게 되는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관련주식 등은 국내 주식 및 채권등에 투자자하는 것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 및 채권등에만 투자하는 혼합주식형투자신탁이나,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여 천연자원 관련 가격 및 시황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관련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4. 운용전문인력(2010.02.28)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김영준	1970	팀장	13개(팀공동)	8,302억 (팀공동)	- 고려대 무역학과/Tuck School of Business (MBA, 다트머스대학) - 한국산업은행 국제투자부 / 현대해상화재보험 해외투자팀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Global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모: 해당사항 없음

주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081015- 20091015	20071015- 20091015	20061013- 20091015	20041015- 20091015	20061016- 20091015
운용(모)	17.22	-17.05			0.08
비교지수	25.90	-14.50			2.05
A1	14.93	-18.77			-1.93
비교지수	25.90	-14.50			2.05
C1	13.97	-19.50			-2.78
비교지수	25.90	-14.50			2.05
C2	14.19	-19.33			-17.36
비교지수	25.90	-14.50			-13.16
C-e	14.36	-19.20			-2.44
비교지수	25.90	-14.50			2.05
C-W	15.95	-18.01			-1.09
비교지수	25.90	-14.50			2.02
C-H	14.16	-19.34			-13.49
비교지수	25.90	-14.50			-9.37

(주 1) 비교지수 : MSCI World Commodity Producers USD 90%,KBP콜 10%

* 설정일로부터 2009년 6월 9일까지는 'CS천연자원지수 90%,KBP콜 10%'로 비교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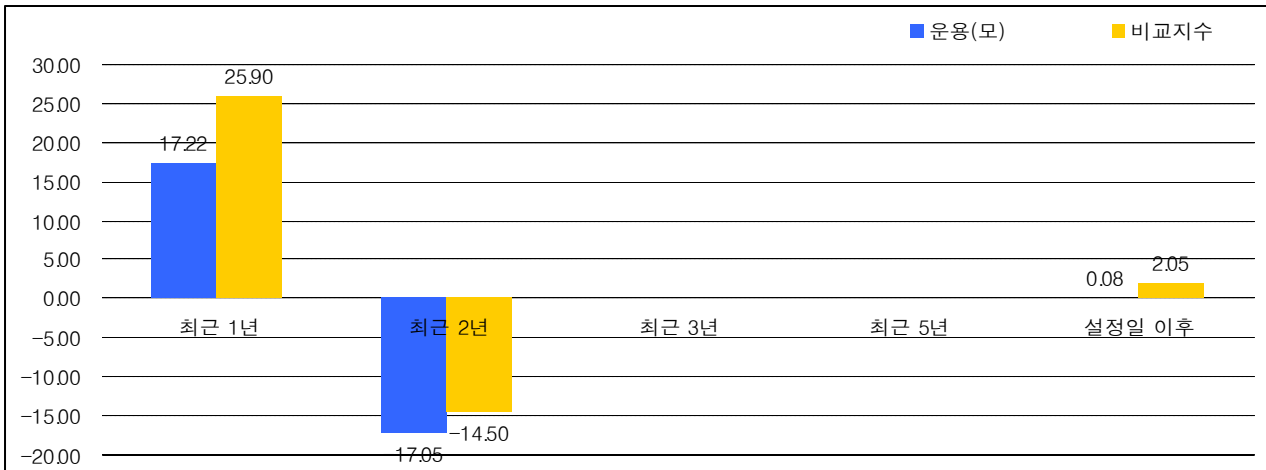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본 수익률은 신고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주 6) 상기의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개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시장 상황 및 펀드 운용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및 비교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비교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 가능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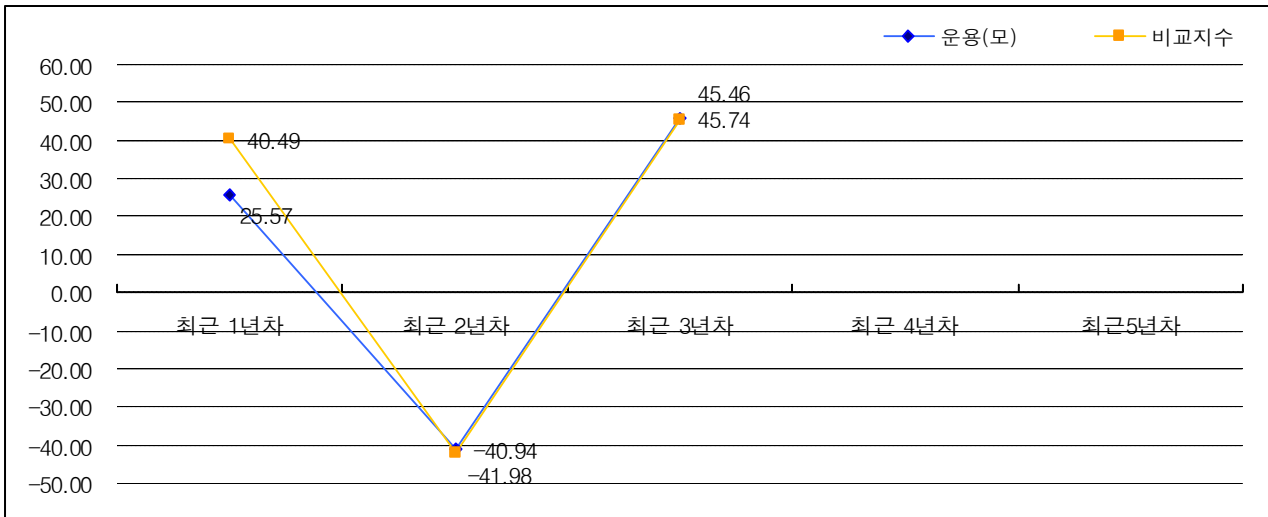


2) 연도별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081016-20091015	20071016-20081015	20061016-20071015		
운용(모)	25.57	-40.94	45.74		
비교지수	40.49	-41.98	45.46		
A1	23.11	-42.24	43.03		
비교지수	40.49	-41.98	45.46		
C1	22.09	-42.79	41.86		
비교지수	40.49	-41.98	45.46		
C2	22.33	-42.67			
비교지수	40.49	-41.98			
C-e	22.51	-42.56	42.33		
비교지수	40.49	-41.98	45.42		
C-W	24.21	-41.66	44.09		
비교지수	40.49	-41.98	45.21		
C-H	22.30	-42.66			
비교지수	40.49	-41.98			

- (주 1) 비교지수 : MSCI World Commodity Producers USD 90%,KBP콜 10%
- * 설정일로부터 2009년 6월 9일까지는 'CS천연자원지수 90%,KBP콜 10%'로 비교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 (주 2)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 3)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 4)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 5) 본 수익률은 신고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주 6) 상기의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개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시장 상황 및 펀드 운용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및 비교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비교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 가능 합니다.
- (주 7) 모투자 신탁 : 최근 4년차 수익율은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Class A : 최근 4년차 수익율은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Class C1 : 최근 4년차 수익율은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Class C2 : 최근 3년차 수익율은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Class C-e : 최근 3년차 수익률은 11.9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C-W : 최근 3년차 수익률은 11.52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C-H : 최근 3년차 수익율은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제3부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집합투자기구 (클래스)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A1	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C2	10 억원 이상 50 억원 미만 매입시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C-e	온라인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하는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보유, 집합투자기구에서 매입시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C-H	장기주택마련 저축 가입대상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C1	10 억원 미만 매입시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C3	50 억원 이상 100 억원 미만 매입시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C4	100 억원 이상 매입시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총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 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비용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 비용			
A1	1	0.9	0.08	0.03	0.0049	2.0149	-	0.2120	
C1	1	1.75	0.08	0.03	0.0056	2.8656	-	0.2115	
C2	1	1.55	0.08	0.03	0.0045	2.6645	-	0.2114	
C3	1	1.35	0.08	0.03	0.0056	2.4656	-	0.2115	
C4	1	0.09	0.08	0.03	0.0056	1.2056	-	0.2115	
C-e	1	1.4	0.08	0.03	0.0063	2.5163	-	0.2118	
C-W	1	0	0.08	0.03	0.0045	1.1145	-	0.2325	
C-H	1	1.575	0.08	0.03	0.0039	2.6889	-	0.2067	
지급시기	매3개월/	매3개월/	매3개월/	매3개월/	사유발생	-	-	사유발생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사유발생 시	사유발생 시	사유발생 시	사유발생 시	시			시
--	-----------	-----------	-----------	-----------	---	--	--	---

-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직전 회계연도: 2008.10.16 ~ 2009.10.15]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직전 회계연도: 2008.10.16 ~ 2009.10.15]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4) 미설정된 편지의 기타비용 및 증권 거래비용은 설정된 클래스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A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06	728	1,176	2,417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94	899	1,530	3,225
C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3	838	1,429	3,028
C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3	777	1,328	2,828
C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4	385	666	1,468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8	793	1,354	2,879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4	356	617	1,363
C-H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6	846	1,441	3,052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임.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후취판매수수료를 0%,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2) 종류별로(A1,C1)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또는 보수변경 등에 따라 일치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음

2. 과세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인 Class C-H 가입자에 한함)

이 투자신탁의 **Class C-H 수익증권**은 **만18세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합니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합니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에 대하여 주택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 장기주택마련 투자신탁입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어야 합니다.

1) 가입자격

가입대상	<p>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p> <p>②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p>
비과세혜택 가입시한	2012년 12월 31일 까지 (단, 소득공제 혜택은 2009.12.31 이전 가입자에 한함)
가입한도	분기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합계액) 선납 또는 후납 불가

2) 세제혜택 및 법정 해지요건

배당소득 비과세	<p>1) 저축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동안에 원금이나 배당수익 등의 인출이 없는 경우</p> <p>2) 2012. 12. 31 까지 가입자에 해당됨</p> <p>* 단, 7년 이내에 해지 또는 원금이나 배당수익 등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음으로써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함</p> <p>※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 해지 시 (2008.1.1이후 주택취득자에 한함)
근로소득 공제	<p>1) 공제대상 : 2009.12.31이전 가입한 자로서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p> <p>2) 내용: 근로소득자인 세대주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에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이 경우 주택자금 대출과 합산하여 산정함)</p>
세액추징	<p>1) 이자소득세 추징: 저축계약체결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해지 또는 원금이나 배당수익 등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음으로써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함</p> <p>2)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소득공제액 추징 :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함) 추징. 다만, 실제 소득공제 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함</p>
법정 해지요건	<p>최초 가입 7년 후, 3년마다 저축 가입요건 재검증 → 요건 미충족시 법정해지 처리</p> <p>세대원을 포함하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p>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위의 세제우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 환매절차

1)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하여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wooriam.com) · 판매회사 · 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매입	환매
<p>①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② 오후 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① 오후 5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p> <p>② 오후 5 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p>
<p>D D+1 D+2 D+3 자금납입일 (5시이전) 기준가 적용일 기준가 적용일 자금납입일 (5시이후) 기준가 적용일</p>	<p>D D+1 D+2 D+3 D+4 D+5 D+6 D+7 D+8 환매청구일 (5시이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청구일 (5시이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p>

제4부. 요약 재무정보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3기(2008.10.16 - 2009.10.15)	대주회계법인	적정
제 2기(2007.10.16 - 2008.10.15)	대주회계법인	적정
제 1기(2006.10.16 - 2007.10.15)	대주회계법인	적정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항 목	대차대조표		
	제 3기 (2009.10.15)	제 2기 (2008.10.15)	제 1기 (2007.10.15)
운용자산	156,826,565,905	144,357,329,697	269,485,905,128
증권	153,134,126,456	143,275,136,132	268,867,256,61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3,692,439,449	1,082,193,565	618,648,517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092,654,227	3,775,510,347	2,177,668,534
자산총계	159,919,220,132	148,132,840,044	271,663,573,66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722,431,167	6,384,546,335	5,675,575,798
부채총계	722,431,167	6,384,546,335	5,675,575,798
원본	231,484,279,818	241,608,418,041	182,506,641,450
수익조정금	-188,015,383	1,887,280,920	36,499,057,789
이익잉여금	-72,099,475,470	-101,747,405,252	46,982,298,625
자본총계	159,196,788,965	141,748,293,709	265,987,997,864

손익계산서			
항 목	제 3기	제 2기	제 1기
	(2008.10.16 - 2009.10.15)	(2007.10.16 - 2008.10.15)	(2006.10.16 - 2007.10.15)
운용수익	23,752,601,729	-101,612,748,430	47,166,984,848
이자수익	200,718,830	1,071,728,621	541,736,592
배당수익	3,557,551,732	5,180,080,134	1,691,768,119
매매/평가수익(손)	19,994,331,167	-107,864,557,185	44,933,480,137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43,605,800	20,671,000	1,400,00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43,605,800	20,671,000	1,400,000
기타비용	132,794,395	113,985,822	183,286,223
당기순이익	23,576,201,534	-101,747,405,252	46,982,298,625
매매회전율	102.74	93.37	77.87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